대한민국의 HACCP 법규 및 운영제도

HACCP laws and operating system in Korea

김형식, 조재진*

Hyung-Sik Kim, Jae-Jin Cho*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Korea Agency of HACCP Accreditation & Service

조재진

Correspondence to

Jae-Jin Cho,
Chief Inspector, Department of Technical Innovation, Korea Agency of HACCP Accreditation and Services, 156, Osongsaengmyeong 5-ro, Osong-eup, Heungdeok-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28160 Korea
Tel: +82-43-928-0140
Fax: +82-43-928-0149
E-mail: cjj@haccp.or.kr

1.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법령

대한민국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관리되며 표 1, 2에 나타내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 식품 안전관리와 관련된 조항은 「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3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2에 해당한다[1].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 · 도살 ·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 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산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조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4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8에 해당한다[1].

표 1. 대한민국 식품위생법 HACCP 관련 법령

구분	식품	
식품위생법	제48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48조의2	인증 유효기간
	제48조의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 · 평가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3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34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제63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제64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제65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
	제66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 · 평가
	제67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제68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 · 검사 면제
	제68조2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표 2. 대한민국 축산물위생법 HACCP 관련 법령

구분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안전관리인증기준
	제9조 2	인증 유효기간
	제9조 3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제9조 4	인증의 취소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 · 운용 등
	제7조 2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제7조 3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제7조 4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7조 5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7조 6	조사 · 평가의 방법 등
	제7조 7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제7조 8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2.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담당 기관

대한민국의 식품 · 축산물 안전관리는 특정 기관에 권한 및 책임을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시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2]. 담당 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있다[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종합 대책 수립,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총괄, HACCP 의무적용 사업, 재정 및 기술지원 사업, HACCP 제도 대국민 홍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2].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증취소 및 시정 명령(도축장, 집유장, 농장 제외), HACCP 조사 · 평가(식품/ 축산물 의무적용 분야에 한함), HACCP 운용 검증, 영업자에 대한 조치를 담당하고 있다[3].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도축장 · 집유장 · 농장에 대한 인증(지정) 취소 및 시정 명령, 도축장 · 집유장에 대한 HACCP 적용 및 사후관리, HACCP 정보 제공, 교육 및 훈련 등을 담당한다[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 및 축산물 작업장 · 업소 · 농장(도축장 · 집유장 제외)의 HACCP 인증 및 연장, 조사 · 평가(의무적용 분야 제외), 기술지원, HACCP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3].

3. HACCP 운영체제

가. HACCP의 역사

대한민국은 1996년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제정하였고 1997년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HACCP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4]. 이후 1998년 도축장에, 2003년 어묵류, 냉동식품, 냉동수산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 식품 등 6개의 품목에 대해 HACCP 의무적용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다[4].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배추김치, 집유업, 유가공업, 과자 · 캔디류, 빵류 · 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 · 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및 연 매출액 100억 이상 업체에 대하여 HACCP 의무적용 대상으로 지정하였

다[4]. 2016년에는 순대, 떡볶이 떡, 알가공품 등 3개의 품목과 알가공업을 HACCP 의무적용 대상으로 지정하였다[4]. 2017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출범으로 식품과 축산물 HACCP 담당기관을 통합하였다[4].

나. HACCP 의무적용

대한민국은 식품 및 축산물에 따라 품목과 업종에 따라 HACCP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대상은 표 3에 나타내었다. 식품은 어묵과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 음료, 배추김치, 레토르트식품, 즉석조리식품(순대), 매출액 100억 이상 제조업체,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초콜릿류, 특수용도 식품, 국수, 유탕면류이 HACCP 의무적용 품목에 해당한다[5]. 축산물은 도축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알가공업), 집유업(농식품부 위탁), 식용란선별포장업이 HACCP 의무적용 업종에 해당한다[6]. 또한 축산물가공업 중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은 단계적으로 HACCP 의무적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각 2024년 12월 01일, 2029년 01월 01일에 의무적용이 완료될 예정이다[7].

표 3. 대한민국 HACCP 의무적용 대상

구분	의무적용 대상
식 품	어묵, 냉동수산식품(어류 · 연체류 ·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 만두류 · 면류), 빙과류, 비가열 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즉석조리식품(순대)
	매출액 100억 이상 제조업체
	어육소시지, 음료류, 초콜릿류, 특수용도식품,
	과자 · 캔디류, 빵류 · 떡류, 국수 · 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축산물	도축업, 집유업(농식품부 위탁)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다. 소규모 HACCP

대한민국의 소규모 HACCP 업체 기준은 매출액과 종업원 수 기준으로 분류된다[6]. 식품제조 · 가공업소(식품첨가물 포함),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는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이거나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 업소로 분류된다[6]. 또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축산물운반업소, 축산물보관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소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업체를 소규모 업소로 분류된다[6]. 일반 HACCP은 80개 항목을 평가 · 관리하는데 비해, 소규모 HACCP은 25개 항목을 평가 · 관리한다[6].

라. HACCP 적용

대한민국 HACCP은 인증신청, 서류검토, 현장조사, 결과 판정 및 HACCP 인증서 발급으로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6]. HACCP 인증신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HACCP 적용업소 인증 신청서에 업소별 또는 적용대상 식품 유형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6].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 · 안전관리인증업소 · 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 · 안전관리인증업소 · 안전관리인증농장(HACCP) 인증 신청서에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6]. 첨부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실시상황 평가표에 의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6].

서류검토 후 현장조사는 HACCP 실시상황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신뢰성이 의심되면 제품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경우 선행요건 중 회수 프로그램 관리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6]. 현장조사 결과 보완판정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 내에 보완요구 사항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HACCP 적용업소의 인증 절차를 종결 처리한다[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평가 결과 상기 기준에 적

합한 경우 해당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 판매업소를 HACCP 적용업소로 인증하고, 축산물의 가축사육 농장, 축산물의 처리, 가공, 포장, 유통,및 판매시설 및 영업장 및 업소를 HACCP 적용업소로 인증하고 해당 인증서를 발급한다[6].

마. HACCP 심사

HACCP 심사는 시작회의, 선행요건 관리 · HACCP 관리 기준서 검토 · 현장점검, 평가팀 회의, 정리 회의 순서로 진행된다[8]. 또한 심사(평가) 매뉴얼은 식품 · 축산물 업종별로 구성되며, 해당 업종에 맞는 실시상황평가표와 심사(평가) 매뉴얼을 기반으로 평가하며, 세부 구성은 각각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8]. 평가항목별 세부 기준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실시상황평가표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관리는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한 후 이탈이 발생할 시 개선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기준 변경사항을 파악하여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현장은 영업장 및 작업장 등 기준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시작회의는 평가자, 참석자 소개 및 HACCP 팀장 또는 경영자 인터뷰로 회의를 시작하며 평가 절차 소개 및 조율을 통해 현장평가 시간을 협의한다[8]. 선행요건 관리 · HACCP 관리 기준서 검토 · 현장점검은 기준서와 기록 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운영상태와 모니터링 준수, 현장 점검표 기록 여부를 확인한 후 현장 작업자 인터뷰를 실시한다[8]. 평가팀 회의는 평가자 상호 간의 정보교환 및 개선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평가 분야별 부적합 사항을 확인 · 검토한다. 정리 회의 시에는 평가자는 수검자에게 개선 요구사항을 설명한 후 의견을 수렴하고 수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판정하여 통보한다. 또한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에 1회 HACCP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4. 요약

대한민국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관리한다. 또한 특정 기관에 권한 및 책임을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시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종합 대책 수립,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총괄 업무, 인증업소 HACCP 조사 · 평가(식품/ 축산물 의무적용 분야에 한함)를 담당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HACCP 인증 및 연장, HACCP 조사 · 평가(의무적용 분야 제외), 기술지원, HACCP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고, 소비가 많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목 및 업종별 HACCP 의무적용을 규정하였다. 식품은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냉동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의 식품과 배추김치를 대상으로 의무적용을 실시한다. 축산물은 도축장, 집유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하여 의무적용을 실시하고 있다.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은 단계적으로 HACCP 의무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규모 업소는 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분류되는데 업종별로 기준은 상이하다.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가공업소 등은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등은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 HACCP 평가항목보다 소규모 HACCP 평가항목이 더 적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HACCP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참고 문헌

1.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의 법령체계, https://elaw.klri.re.kr/kor_service/struct.do, 2021-11-06

2.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년 HACCP 사업, 2021

3. 구경민, HACCP 인증 현황 및 발전방안, Food Science and Industry 2021, 54(2).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 및 축산물 제도, https://fresh.haccp.or.kr/haccp/introduction/haccpIntroduction.do?tp=2_2 Retrieved 2022-07-01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적용분야, https://fresh.haccp.or.kr/haccp/introduction/haccpIntroduction.do?tp=3_1 Retrieved 2022-07-01

6.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B%9D%ED%92%88%20%EB%B0%8F%20%EC%B6%95%EC%82%B0%EB%AC%BC%20%EC%95%88%EC%A0%84%EA%B4%80%EB%A6%AC%EC%9D%B8%EC%A6%9D%EA%B8%B0%EC%A4%80 Retrieved 2022-07-01

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인증 의무적용 대상 편, https://www.haccp.or.kr/user/boardDetail.do Retrieved 2022-06-14

8.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 평가(심사) 매뉴얼 2020